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4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4.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II. 제안이유

- '19.3월에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탈북학생 지원 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탈북학생 방학학교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탈북학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탈북학생 지원의 효과성 향상
- 탈북학생 지원 사업 중 정책적 기능이 적고 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을 도입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임을 고려할 때 일반수련업체에 용역 계약 시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청 직접 수행 시에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탈북학생 방학학교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탈북학생과 교원이 함께하는 3박4일 간 1:1 학습멘토링 캠프 (연2회)

라. 민간위탁 기간 : 2019.11.1. ~ 2021.10.31. [2년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제한입찰

바. 예산 규모 : 220,000천원

IV. 참고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1) 탈북학생 방학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주시민생활교육과-7066,2019.5.21.호)

2.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별첨2)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첨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41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동 동의안의 “탈북학생 방학학교”는 탈북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능력 배양, 학생·교사 1:1 멘토링 운영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 진로·직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적성 발견을 목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탈북학생과 교원이 함께하는 1:1 학습멘토링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¹⁾ 그동안 위탁운영해오던 “탈북학생 방학학교” 사업을 2018년도에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캠프 운영의 전문성 결여, 행정의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1)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관 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2)

그러나 금년 3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탈북학생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표1] 서울 탈북학생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학생수(명)	566	544	637	625	554	589
제3국출생 인원(명)	174	211	278	271	262	333
전체 탈북학생 대비 제3국 출생 비율(%)	30.7	38.8	43.6	43.4	47.3	56.5

※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

[표2]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현황(최근 5년간)

순	사업명	일시	참가인원(명)	공모방법	운영 단체	예산액	비고
1	2014학년도 겨울방학학교	'15.1.13~1.16	220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55,000	특교
2	2015학년도 여름방학학교	'15.8.10~8.13	249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55,500	특교
3	2015학년도 겨울방학학교	'16.1.4~1.5	85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15,000	특교
4	2016학년도 여름방학학교	'16.8.8~8.11	194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55,000	특교
5	2016학년도 겨울방학학교	'17.1.11~1.13	152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20,000	특교
6	2017학년도	'17.8.7.~8.10.	153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	55,000	특교

2) 2) 2009~2017년까지는 공모 선정을 통하여 주관 단체(남북교육연구회 등)에서 운영 함.

(문제점) 탈북학생 관련 네트워크 부재로 탈북학생 및 지도교원 모집, 학습 프로그램 구성, 안전.생활 지도, 지원인력 부족 등 문제점 발생

	여름방학학교				교육연구회		
7	2017학년도 겨울방학학교	'18.1.8.~1.11.	181	공개공모	서울초중등남북 교육연구회	55,000	특교
8	2018학년도 여름방학학교	'18.8.6.~8.9.	132	직접운영		55,000	특교
9	2018학년도 겨울방학학교	'19.1.7.~1.10.	138	직접운영		55,000	특교

* 공모 참가자격: 탈북학생 교육 능력을 갖춘 교육기관(단체)

나.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8조에³⁾ 따르면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⁴⁾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동의안의 “탈북학생 방학학교” 사업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탈북학생 교육 네트워크 형성, 남북한 이해교육, 탈북학생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3)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탈북학생 방학학교” 사업은 학생 위주의 일반적인 캠프 운영과 달리 현직교원(멘토)과 탈북학생(멘티)을 1:1로 매칭한 후 학습과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1:1 학습멘토링 캠프로, 활동 내용 중 50% 이상이 멘토와 멘티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3] 2018학년도 겨울방학학교 캠프 일정표

일자	1. 7 (월) (1일차)	1. 8 (화) (2일차)	1. 9 (수) (3일차)	1. 10 (목) (4일차)
시간				
07:00 ~ 08:30	모이기 및 인원 파악 (09:00) 출발(9:10)	하루시작활동(체조, 식사 등)		
08:30 ~ 09:00		활동 준비		
1교시 (09:00 ~ 09:50)		학습 활동②	학습 활동④	학습 활동⑥
2교시 (10:10 ~ 11:00)	도착 및 숙소 배정	학교급별 교과지도	학교급별 교과지도	학교급별 교과지도
3교시 (11:20 ~ 12:10)				소감문 쓰기 학습 정리하기
12:10 ~ 13:10	점심식사 및 휴식			
4교시 (13:20 ~ 14:10)	입소식 (생활 안내)	학습 활동③	학습 활동⑤	퇴소식
5교시 (14:30 ~ 15:20)	진로 활동①	학교급별 교과지도	학교급별 교과지도	수련원 출발(14:00)
	우리 함께 해내요 학습자료 분배			
6교시 (15:40 ~ 16:30)	학습 활동①	체험 활동①	진로 활동④	서울 도착 예정 (16:00 이후)
7교시 (16:50 ~ 17:40)	학교급별 교과지도	계절놀이 (눈썰매, 얼음썰매 등)	미래 사회를 경험해요	
		사제 동행 활동	학생 활동	
17:40 ~ 18:40	저녁식사 및 휴식			

8교시 (18:40 ~ 19:30)	진로 활동②		진로 활동③	체험 활동②	진로 활동⑤ 마음을 전해요
	친구와 함께 꿈을 키워요	멘티에게 다가가기	내 안의 나를 발견해요 (다양한 예체능 활동)	끼를 펼쳐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촛불의식)	
9교시 (19:50 ~ 20:40)	학생 활동	교사 연수	학생 활동	사제 동행 활동	
	멘티학생: 자유시간 및 자율학습 멘토교사: 교사 협의회				
20:40 ~ 21:40	인원 점검 및 취침 준비				
21:40 ~ 22:00	취 침				

○ 1:1 학습멘토링 캠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인 바

- 1:1 학습멘토링 특성상 교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탈북학생과 지도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이 필요할 것이며,
- 멘토·멘티 매칭, 지도교원 연수, 오리엔테이션, 캠프기간 중 탈북학생 밀착지도 등 학습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탈북학생 관련 네트워크 부재로 탈북학생과 지도교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운영 기간 중 학생과 교사의 안전·생활 지도를 위한 지원 인력 부족, 강사 확보, 학습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동 사업을 체험활동 위주의 일반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업체를 통해 추진할 경우 수련업체의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1:1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겠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위탁기간이 2년인 만큼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동 사업을 운영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 종료 후에는 동 사업이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